

의안번호	2208966
의 퇴 인	민형배의원
회 답 일	2025.4.15.
추계번호	25D1555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신설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총 980만원(연평균 196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만원)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안 제5조의2) 신설	140	280	140	140	280	980	19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조의2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신설	감사원장이 제청할 감사위원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감사원에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두되,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감사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 - 감사위원으로 최장기간 재직한 감사위원. 다만, 재직기간이 같은 감사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로 함 -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 - 행정안전부차관 -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 4명. 이 경우 적어도 2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함	의무규정
2	안 제48조의2 (감사청구권)	18세 이상의 국민은 감사원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원장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음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제5조의 2(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신설	○	
2	안 제48조의2(감사청구권)	-	미대상: 개정안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국민감사청구는 감사원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정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 예산 범위에서 수행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개최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민간위원(4명)에게 지급하는 회의 참석 수당으로 한정¹⁾
- 민간위원(4명)에게 지급하는 회의 참석수당은 1인당 35만원으로 함
 - 민간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민간위원 수당(35만원)을 참고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 제10조²⁾, 「각종 위원회 등의 참석수당 등 지급에 관한 지침」 제2조 및 제3조³⁾에 따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중 법관 또는 법원

1) 회의진행에 필요한 복사비, 통신비, 회의준비비 등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나, 상설위원회가 아니고 1년에 평균 1.4회 개최하는 점을 고려하면 연간 소요비용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어 기존예산으로 충당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추계에서 제외

2)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 제10조(수당 등) 대법원장은 추천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3) 「각종 위원회 등의 참석수당 등 지급에 관한 지침」 제2조(참석수당)

①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포함) 및 각급 법원의 각종 위원회(연구반, TFT 등 포함, 이하 같다)에 참석한 위원(연구반원, TFT팀원 등 포함,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1일당 150,000원 한도 내의 참석수당을 지급하되,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50,000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원격지에서 위원회에 참석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공무원인 위원을 제외한 외부위원에게 참석수당 15만원과 용역제공사례금 20만원을 각 지급

○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도 민간위원 수당으로 35만원을 지급함

□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회의는 현행 감사위원 임기(4년) 및 정년(65세)을 고려하여 위원마다 각 1회씩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경우 대법관 후보 추천시 평균적으로 1회씩 회의를 개최

□ 개정안 부칙에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안 심사 기간 및 예산 확보 등을 고려한 후 현직 감사위원 중 가장 먼저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25년 12월)에 맞춰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으로 가정, 2025년 12월부터 추계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어 2025년부터 2029년까지의 기간을 추계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추천위원 회의 참석수당은 민간 추천위원 수(4명)에 회의 참석수당(회당 35만원), 회의 개최 횟수(각 1회), 추천위원회 소집 횟수(임기 종료 시점에 따라 연도별 상이)를 곱하여 산정

○ 현직 감사위원(6명) 임명시점은 각각 2021년 12월, 2022년 4월, 2022년 4월, 2023년 11월, 2024년 2월, 2025년 1월임

③ 위원이 공무원인 경우는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 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참석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위원이 법관 및 법원공무원인 경우에는 참석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조(용역제공에 대한 사례금)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단순한 회의참석 이외에 사전 자료수집·회의 안전검토 등 별도의 용역을 제공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150,000원 이내의 안전검토수당 등의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검토 등 별도의 용역을 제공한다는 것은 회의에 참석하여 주제발표를 하거나 주제발표에 준하는 검토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 등을 말한다.

② 주제발표문이나 검토보고서의 분량이 A4 용지 30장(200자 원고지 120장)을 초과하고, 그 내용이 독창적이며 가치가 있는 등 별도의 용역 제공에 과다한 노력을 요한 경우에는 250,000원의 범위에서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이 공무원인 경우는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 안전검토 등 별도의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한하여 사례금을 지급한다. 다만, 위원이 법관 및 법원공무원인 경우에는 사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따라서, 현직 감사위원(6명)의 임기종료 시점은 각각 2025년 12월, 2026년 4월, 2026년 4월, 2027년 11월, 2028년 2월, 2029년 1월이므로 각 시점에 맞춰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함
 - 2029년 12월에 임기가 만료될 위원의 경우도 포함
- 1회 회의 개최당 140만원 소요 (4명×35만원= 140만원)

[표 2] 회의 참석수당: 2025~2029년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추천위원회 소집 횟수 (회, a)	1	2	1	1	2	7
민간 추천위원 회의 참석수당(만원, b)	140	140	140	140	140	-
소요비용 (만원, axb)	140	280	140	140	280	98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추계결과,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신설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총 980만원(연평균 196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

[표 3]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만원)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안 제5조의2) 신설	140	280	140	140	280	980	19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보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임지원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임지원	02-6788-4664	img1@assembly.go.kr